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208012	권칠승의원	2025.2.10.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2	일부개정법률안	2208073	이인선의원	2025.2.11.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관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0).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1).

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은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u>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u> <u>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u> <u>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신 설></u>	<u>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u>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의 지정 등) ① . 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생 략)	<u>초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u> ③ <u>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u>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u> 4. <u>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 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 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u> ④ (현행과 같음)
--	---